

◎ 가맹단체 가맹·탈퇴규정

제정 2022. 8. 17.
개정 2023. 4. 7.
개정 2023. 12. 21.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규약 제8조 및 제9조에 의하여 본회 가맹 및 탈퇴의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①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이라 함은 본회 규약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여 본회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 “정가맹단체”는 가맹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 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여 본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 의결로써 가맹을 확정된 종목별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를 말한다.
3. “준가맹 단체”라 함은 본회 이사회 의결로써 준가맹을 승인받아 본회 규약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제한적으로 적용받는 단체를 말한다.
4. “인정단체”라 함은 본회 이사회 의결로써 당해 단체의 대표성만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본회 정관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5. “탈퇴”라 함은 본회에 의해 가맹을 승인받은 가맹단체가 본회 규약에서 정한 가맹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종목별 경기단체라 함은 종목별로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경기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4. 7, 2023. 12. 21.>

③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라 함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중앙단체 중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 승인을 받은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4. 7, 2023. 12. 21.>

제 3 조(가맹구분) ① 가맹단체는 정가맹단체, 준가맹단체, 인정단체로 구분한다.
<개정 2023. 4. 7.>

② 본회는 가맹시킬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거나 제5조의 가맹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규약 제6조에서 정한 권리를 제한하여 준가맹 단체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명시된 승인 조건을 준수해야한다.

③ 본회는 필요한 경우 당해 단체의 대표성만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되 본회와의

권리.의무관계가 없는 인정단체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명시된 승인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④ 본회는 준가맹 단체의 정가맹에 대하여 준가맹 승인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여야 재심의 할 수 있으며, 승인조건 이행여부를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

제 4 조(가맹신청서류) 본회에 가맹코자 하는 가맹단체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매 회계연도 1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회는 다음해 2월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패럴림픽대회, 데플림픽대회 및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에 국가대표 파견 및 훈련을 위한 경우에는 심의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의 경우 제4호, 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1.>

1. 가맹신청서(본회 양식)
2. 단체연혁
3. 임원명단(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첨부)
4. 정관 또는 단체규약
5. 경기개요 및 경기규칙
6. 시군지부 설치현황
7. 선수 또는 팀 등록현황
8. 전년도 사업실적 및 해당연도 사업계획서 <개정 2023. 12. 21.>
9. 전년도 예.결산서 및 해당연도 예산서 <개정 2023. 12. 21.>
10. 가맹을 결의한 대의원총회 회의록(법인인 경우 이사회 회의록)
11. 중앙 가맹단체 가맹확인서
12. 장애유형별분과위원회 설치현황 <신설 2023. 12. 21.>

제 5 조(가맹요건) ① 본회 가맹에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당해 유일의 경기단체나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일 것.
2. 경상북도를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경기단체나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일 것.
3. 5개 이상의 시.군지부를 소유할 것 다만, 경기종목 및 체육단체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4.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공인 종목이거나 국제장애인체육기구가 인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기종목일 것. 그리고, 생활체육 종목 중 보급도가 높고 향후 발전가능성이 인정되는 종목일 것. 다만, 경기종목 및 체육 단체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7.>
5. 당해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6. 종목별 경기단체는 장애유형별로 분과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장애유형 종목이 패럴림픽대회, 농아인올림픽대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종목이 아닐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 4. 7. 개정 2023. 12. 21.>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본회가 가맹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③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의 경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1.>

제 6 조(심의절차) ① 가맹 및 탈퇴에 관한 심의절차는 본회 규약 제8조와 제9조에 의한다. <개정 2023. 12. 21.>

② 준가맹 경기단체 및 인정단체의 지정은 본회 이사회 의결로써 승인한다.

제 7 조(제한사항) ① 본회 가맹단체라 할지라도 본회 규약에서 정한 의무사항 및 지시사항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본회 규약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본회가 지원하는 예산의 지원을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3. 4. 7, 2023. 12. 21.>

② 장애인체육회 정관에서 정한 권리사항 중 대의원 파견권은 정가맹단체만 갖는다.

<개정 2023. 4. 7.>

③ 종합국제대회 종목에 해당하는 준가맹단체 및 인정단체에 대해 장애인체육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리와 의무사항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해당 단체의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주무부처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4. 7.>

제 8 조(탈퇴요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단체는 본회에서 탈퇴케 한다.

1. 가맹단체가 해산하거나 탈퇴를 요청하였을 경우
2. 제5조의 가맹요건을 상실하여 가맹단체로서의 존속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곤란한 경우
3. 본회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장애인 체육발전을 저해하는 경우

제 9 조(탈퇴신청) 가맹단체가 제8조 제1항에 의해 탈퇴코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탈퇴신청서
2. 탈퇴사유서
3. 탈퇴를 결의한 대의원총회 회의록(법인인 경우 이사회 회의록)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3. 4. 7.)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3. 12. 21.)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